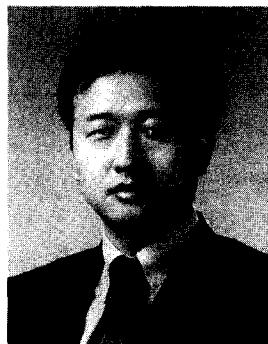


OECD 가입이 주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1. OECD가입의 의미



박 영 규
(중앙대학교 상경학부 교수)

1996년 12월 12일 우리나라는 OECD가입서를 프랑스 정부에 기탁함으로써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정식 회원국이 되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이로써 현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오던 OECD가입은 이제 논란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 된 것이다. 흔히 부자나라들의 모임(rich country club)으로 인식되어 있는 OECD의 역사는 세계 2차대전 직후인 1948년까지 거슬러올라간다. 당시 유럽의 전후 복구사업을 위해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가 태동하였고 여기에는 승전국이며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OEEC를 통해 유럽 각국의 복구사업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유럽경제는 빠른 회복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OEEC에 참여하여 미국의 원조를 받던 영국, 프랑스, 독일등은 오히려 다른국기를 도와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따라서 OEEC는 새로이 조직을 개편하여 그동안 미국에서 받았던 원조를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미국과 힘을 합쳐 세계의 더 어려운 나라들의 경제를 부흥시키는데 기여하고자 OECD를 창립하였다. 따라서 1961년 OECD출범당시의 회원국은 기존 OEEC회원국 18개국에 미국과 캐나다가 가세한 20개국이었다. 당초 회원국외에는 일본(1964년)이 가장 먼저

■ 目 次 ■

1. OECD가입의 의미
2. OECD가입 추진
3. OECD회원국 의무
4. OECD가입의 득과 실
5. OECD가입이 주류산업에 미치는 영향
6. 대응 전략
7. 맺음말

저 회원국이 되었고 이후 핀란드(1969년), 호주(1971년), 뉴질랜드(1973년)가 뒤를 이었다. 따라서 70년대 초반까지 대부분의 선진국이 OECD의 회원이 되었다.

OECD는 그 출발자체가 회원국들의 이익보다는 선진국들이 힘을 모아 어려운 개도국들을 돋고 국가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촉진하여 세계 경제를 발전시키자는 일종의 엘리트의식을 갖고 출발했으며 따라서 회원국들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 보다는 경제적인 기여가 요구되기 때문에 회원국이 된다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하다. OECD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첫째, 다원적 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둘째,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며, 셋째,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이면 된다. 그러나 가입 자체가 회원국전체의 지지를 얻어야 하므로 다른 선진국들이 동질의식을 느낄만한 경제선진국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이러한 OECD의 선진국들은 선민의식에 벗어나 모임에 대해 다소 개방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가를 포용하여 기구의 위상을 확장시키는 정책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멕시코(1994년), 체코(1995년), 헝가리(1996년), 폴란드(1996년) 등 기존의 OECD회원국에 비해서 경제적인 위상이 뒤떨어지는 국가들이 OECD에 가입하였으며 1996년도 12월 12일을 기하여 한국도 29번째 회원국으로 OECD의 회원국이 되었다. 따라서 한국이 비록 OECD의 일원이 되었지만 1990년대에 가입한 일부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에 비해서 경제수준이 뒤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표2참조〉

2. OECD가입 추진

우리나라의 OECD가입추진은 세계경제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국가의 대외적 위상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1980년대 후반인 제5공화국 말기부터 논의되기 시작되었다. 1990년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OECD산하기구와 각종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하였고 1992년 4월에는 외무부장관 명의로 OECD가입추진의사를 OECD 측에 전달하였다. 따라서 일부에 알려진 것처럼 현 정권에 들어서서 OECD가입이 추진된 것은

〈표 1〉

OECD 회원국 현황 (1996년도 말)

구 分		회 원 국 명
북미		미국, 캐나다
유럽	EC 12개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포루투갈
	EFTA 6개국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		일본, 한국
중동		터키
남미		멕시코
동구권		체코, 헝가리, 폴란드

〈표 2〉

OECD 회원국의 경제력 비교

GDP (10억달러)		무 역 수 지 (10억달러)		경 상 수 지 (100만달러)	
국 가	규 모	국 가	규 모	국 가	규 모
미 국	6,931	일 본	132.1	일 본	111,250
일 본	4,591	독 일	66.0	이탈리아	25,682
독 일	1,835	캐 나 다	28.1	프 랑 스	17,479
프 랑 스	1,331	이탈리아	44.0	네 덜 란 드	16,269
영 국	1,021	프 랑 스	20.5	한 국	-8,948
이탈리아	1,018	스 웨 텐	16.0	캐 나 다	-8,693
캐 나 다	547	한 국	-4.7	영 국	-10,569
한 국	381	영 국	-18.3	독 일	-19,770
네 덜 란 드	334	미 국	-158.6	미 국	-152,980

아니다. 다만, OECD가입을 위한 실무반의 구성 및 적극적인 대책은 김 영삼 정부출범이후 본격화되었다. 먼저 1993년 4월 'OECD가입 실무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993년 6월에 마련된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는 1996년 가입을 목표로 자본, 서비스시장 개방, OECD산하 위원회 및 기구에 대한 가입확대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천명하였다. 이어서 1994년 4월에는 외무부장관 명의로 다시 OECD에 1996년 가입의사 및 준비일정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6년 6월 OECD각료이사회는 사무국을 한국의 OECD가입조건 협의준비를 시작하였다. 1995년 3월에는 정식으로 OECD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1년 7개월간의 협의절차를 끝마치고 1996년 10월 25일 파리에서 신규회원국으로 가입협정에 서명하였다. 이어서 다소의 논란 끝에 1996년 11월 26일 국회에서 가입비준안이 통과되었으며 지난 12월 12일 프랑스에서 OECD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스물아홉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3. OECD회원국 의무

OECD에 가입하는 회원국으로서 지켜야 할 여러가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들 의무는 일반적의무, 권고적의무, 그리고 자유화의무로 나눌 수 있다.¹⁾ 이 중 일반적의무는 기구가 정한 규정을 준수하고 세계경제개발원조를 위해 매년 일정액의 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인데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은 당분간 연 4백만 달러 정도가 될 것이므로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고적의무는 국제경제에서 회원국의 위상에 걸 맞는 역할을 요구하는 것들인데 예를 들면 IMF 8조국 및 GATT체제하에서의 11조국으로 이행하고, 개도국을 지원하는 개발원조위원회(DAC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하라는 것 등인데 권고적의무는 말 그대로 권고적인 것일 뿐이라서 형편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우리나라가 이미 IMF 8조국 및 GATT 11조국으로의 이행조건을 충족하였기

1) 김태동, "OECD가입과 한국의 은행산업", 1995

때문에 권고적의무 역시 우리경제에 충격을 줄 만한 사항들은 아니다. 결국 OECD가입에 따라 우리나라가 가장 우려해야 할 것은 자유화 의무이다. 자유화 의무는 다시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과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아래의 <표 3>은 경상무역외 거래 자유화규약에 따른 11개 자유화 항목과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에 따른 16개 자유화항목을 열거한 것인데 이들 각 항목 아래 148개에 이르는 다양한 소항목들이 떨려있다. 회원국들은 자국의 형편을 고려하여 모든 자유화항목을 다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다른 회원국과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항목을 이행하고 일부항목들만 유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나라도 OECD가입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자유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로는 51개 항목의 자유화를 유보해 놓은 상태이지만 OECD가입 자체는 결국 나머지 항목의 자유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정을 한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자유화 약정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다른 경제기구의 자유화규정에 비해서 OECD의 자유화규정이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이다. 즉 WTO가 무역거래의 자유화를 규정한다면 OECD는 무역거래의 보다 근본이 되는 거래와 계약의 자유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WTO등에는 존재하지 않는 자본이동의 자유화까지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면에서 더욱 부담스러운 것이다.

<표 3> OECD 자유화 항목(대항목에 따른 분류) 및 소항목수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항목	소항목수	자본이동자유화 항목	소항목수
A. 업무및 산업활동	7	I. 직접투자	6
B. 무역	6	II. 직접투자의 청산	2
C. 운송	6	III. 부동산의 거래	4
D. 보험	6	IV. 자본시장에서의 거래	8
E. 은행및 금융서비스	7	V. 단기금융시장에서의 거래	12
F. 자본소득	4	VI. 매매가능금융수단및 비증권화된 권리의 거래	10
G. 여행및 관광	1	VII. 공동투자증권의 거래	8
H. 영화	1	VIII. 무역및 용역제공과 관련된 신용	3
J. 개인소득및 지출	7	IX. 금융상의 신용및 대부	2
K. 공공수입및 지출	4	X. 담보, 보증및 보충금융	8
L. 기타일반	8	XI. 예금계정거래	4
		XII. 외환거래	6
		XIII. 생명보험	2
		XIV. 개인적자본이동	8
		XV. 자본의 실물이동	4
		XVI. 비거주자소유 봉쇄자금의 처분	4
총11개	총57개	총16개	총91개

4. OECD가입의 득과 실

OECD가입이 가져올 여러가지 부담을 생각할 때 가입의 당위성을 떠나서 시기의 선정에는 다소 신중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는 충분한 논란거리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가입이 완료된 현시점에서는 이러한 논란을 벗어나 OECD가입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파급효과를 예측하고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협명하다.

OECD가입에 따른 잇점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경제력에 대한 대외적인 국가위상제고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일부에서 지적하듯이 멕시코, 폴란드등이 회원국인 상태에서 더이상 OECD 회원국이 갖는 위상은 예전과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가입은 가입국의 이미지를 올려주고 이로 인해 국제금융시장등에서의 신용도가 향상된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다. 둘째로 OECD가입은 국내시장의 자유화를 촉진 시킬 수 있으리라 보여진다. 아직까지 정부의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각 분야가 OECD가입을 계기로 자유화속도를 가속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유화는 기업을 무한경쟁으로 내몰아 이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자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셋째 OECD는 가입국들에게 소비자의 권익보호, 국민보건및 안전의 증진, 상거래 관행의 선진화등을 강조하고 있는만큼 OECD가입을 계기로 그동안 소홀해 왔던 국민개개인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제 및 사회 생활의 질적개선내지는 선진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OECD활동을 통해서 세계의 경제동향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주요경제현안의 논의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당장 눈에 띄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지는 않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핵심이 되는 우리경제 구조의 후진성을 개

선해 줄 수 있다는 면에서 궁극적으로는 그 파급효과가 무척 클 것이다.

반면 OECD가입으로 인해서 우려되는 점들 또한 적지않다. 무엇보다도 OECD가입은 국제 간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크다. 위의 <표 3>에서 보듯이 OECD의 자본이동 자유화에는 직접투자, 부동산거래, 증권거래, 외환거래 등 모든 종류를 장기및 단기의 구분없이 망라하고 있다. 이는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에 대한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의 발달상태나 개방상태가 매우 낫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 자본의 이동을 대폭 자유화한다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우리나라와 선진국간의 금리차이가 두배에 이르므로 금리차익을 노린 국제투기자금이 유입되면 통화조절이 어려워지고 인플레이션이 야기될 수 있다. 더구나 현재와 같이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핫 머니(hot money)의 유입이 환율에 절상효과를 준다면 이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불러일으킬수도 있다. 물론 OECD의 입장에서도 한국이 OECD 가입으로 오히려 금융시장의 혼란과 경제의 타격을 입는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단기자본이동과 관련된 자본이동 자유화 조항에 대해서는 이번 가입시 자유화를 유보해 주었고, 한국경제나 자본시장 역시 OECD가입과 더불어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멕시코의 전철을 밟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OECD가입은 보험, 은행, 증권등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자유화로 인해서 국내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경험과 지식에서 앞서 있는 선진금융기관과 경쟁해야하는 어려움을 맞게된다.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은 97년에 외국계손해보험사의 국내진출이 허용되어 외국 신용카드나 할부금융사도 진출이 허용된다.

또한 이미 국내에 진출이 허용된 외국계 은행이나 증권사가 지점이나 사무소의 형태가 아닌 협회법인의 형태로 국내금융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외국금융기관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자금력을 가지고 국내시장을 공략할 경우 국내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상당수의 고객을 이들에게 빼앗겨서 현재로도 부실한 일부 금융기관들의 부실화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셋째, OECD가입의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중 대내직접투자자유화는 모든 산업부문에서 외국인이 국내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자회사, 지점, 사무소 등의 설립에 대한 모든 규제가 자유화되며 외국인이 설립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국내기업이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활동을 허용하고 외국인의 국내회사 설립요건이 지나치게 불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OECD가입이 실물산업 및 기업의 차원에서도 적지않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OECD의 경상무역의 거래 자유화 규약 역시 기술도입등 산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서비스 거래와 운송, 보험 등에 있어서 WTO이사의 자유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OECD가입으로 국내시장은 외국의 제품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활동에 대해서도 개방이 되는 것이며 이는 그 동안 정부의 보호막아래서 국내시장에 대해서만큼은 안심을 했던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국내외 기업들과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여야 함을 의미한다. 게다가 OECD가 회원국들에게 요구하는 노동과 환경에 대한 높은 수준은 이들 국내기업들의 입장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다.

5. OECD가입이 주류산업에 미칠 영향

1) 외국기업에 대한 시장개방

OECD가입은 한 마디로 개방과 선진화를 선언하는 일이며 이에 따라 산업 각 분야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제조업분야는 그 동안 대부분 개방이 되어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개방이 덜 되어 있던 금융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금융산업외에도 개방이 안되어있는 유통서비스분야나 정보통신분야에도 OECD가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이며 국내산업보호, 안보, 미풍양속등을 이유로 외국인 투자가 제한 되어있던 시장들에 대한 빗장이 풀릴것이다. 소주제조업 같은 분야의 경우 OECD가입 때문에 갑자기 시장개방이 앞당겨진 대표적인 업종이다. 또한 외국제품에 대한 규제 역시 OECD가입을 계기로 대폭 완화되고 있다. 최근 영국정부는 우리나라에 위스키와 소주의 주세 차등과세를 철폐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는 위스키와 소주가 알콜성 음료인데도 과세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영국과 같은 위스키 수출국의 제품을 규제하고 효과를 갖고 있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이의 제기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확산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외국제품에 대한 시장개방을 선진국수준으로 이행할 수 밖에 없는 대세이다.

2) 독과점해체 및 완전경쟁

OECD는 또한 자유시장 경제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담합등 자유로운 가격및 품질 경쟁에 제약을 주는 각종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OECD측에서는 98년 10월까지 현재 국내에서 인정되고 있는 각종 카르텔을 폐지하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주류업계가 가장 먼저 이 영향을 받는다. 정부산하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성해 놓은 카르텔 폐지 가능항목에는 “주세법의 자도소주 의무구입비율”의 폐지가 최우선순위가 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OECD의 규정을 따르기위해서는 카르텔외에도

어느 특정제품에 독과점시장이 형성되어있을 경우 시장구조개선을 통해서 이를 경쟁시장화하여야 하고 제품의 가격 결정에 있어서도 정부의 지도나 업계의 협약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시장은 그야말로 완전경쟁을 통해 강자만이 살아남는 무한경쟁의 장이 될 것이다.

3) 유통구조 변혁

유통분야도 금융시장을 제외하고는 OECD가입을 통한 충격이 큰 대표적인 분야이다. 주류업은 유통업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많은 변화가 초래되리라고 보여진다. 국내유통시장은 사실상 오래전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점포수 및 매장면적의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완전개방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의 선진대형유통업체들이 기존의 국내판매망을 확보하거나 할인점, 양판점 등 새로운 형태의 매장을 가지고 새로운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유통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다. 따라서 기업 차원에서의 유통업 진출도 선두제별기업들은 이 분야에 대한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중견그룹이 주를 이루었고 그 외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중간도매상인들을 중심으로 유통망이 형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양성은 고사하고 물류관리시스템이라든지 전산표준화작업등이 거의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러한 시장에 미국(프라이스클럽), 프랑스(카르프), 네덜란드(마크로)등에서 풍부한 자본력과 전문인력, 신기술에 경험까지 갖춘 유통전문회사들이 빨빠르게

진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기에 조만간 몇몇 일본 유통업체들 마저 합작 또는 단독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시장점유율 유지에 큰 덕을 보았던 많은 업체들이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날로 급변하는 새로운 유통시장 구조하에서는 오랜기간 동안 구축해놓은 유통망이 짧은 시간안에 그 가치가 급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외국제품 소비증가

외국유통업체의 진출은 필연적으로 외국제품의 국내시장에 대한 동반진출(piggy back)도 수반할 것이다. 보통서구의 대형유통업체들은 제품별로 낮은 가격으로 대량구매를 하는 협력기업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들을 통한 공급자가 국내구입가격보다 낮은 경우도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외국전문유통업체를 통해 WTO나 OECD에 의한 수입제한철폐에 힘입어 외국의 저가 주류수입이 봇물처럼 밀려들 것이다. 사실상 국내의 물가는 이미 선진국에 비해서 비싼 편이다. 맥주(5백그램 기준)의 경우만 보더라도 영국이나 일본정도가 우리보다 값이 비쌀 뿐 대부분의 선진국가격이 우리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싸다(표4참조). 따라서 이러한 선진국 제품이 효과적인 유통망을 끼고 국내시장에 진입할 때는 국내시장을 독과점하던 선두기업들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다.

OECD가입을 계기로 진행되고 있는 전반적인 경제 및 소비시장구조에 대한 선진화는 단지 물

〈표 4〉

OECD국가 주요도시의 맥주가격비교

도시	런던	빈	프랑크푸르트	코펜하겐	뉴욕	동경	밀라노	파리
가격(\$)	3.10	1.11	0.65	0.85	1.14	2.67	0.98	1.05

리적인 수입제한을 철폐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 속의 수입제한도 무너뜨리고 있다. 사실상 아직 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의식속에는 국산품애용이라든가 외제 술, 담배를 거부하는 습관이 남아있다. 그러나, 외국제품이 주변에 흘러넘치고 가격마저 저렴할 때는 소비자는 자신들의 경제적이익을 위주로 구매하고 소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정부나 언론이 이를 관여하는 것 자체가 OECD정신에 위배되며 선진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 제품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신장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소비자의 의식의 변화야 말로 국내업계에 있어서는 어려한 개방조치 보다 무서운 변화가 될 것이다.

5) 소비자권익 및 환경보호

OECD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도록 회원국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먼저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하자가 있는 제품의 리콜제라든가 유통기한 및 내용물의 성분표시등이 강화될 것이며 음식료물의 경우 철저한 안전검사가 시행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이다. 업계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소비자보호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경제적인 원가부담이 높아질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다.

한편,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에 몰두하면서 환경보호는 다소 사치스러운 것으로 간주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때문에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는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어 OECD 역시 이를 문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OECD에서는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방출량을 1990년수준으로 억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구들은 기업체에게 환경보존을 위한 각종 공해처리시설 비용을 부담시킬 것이다. 소비자 권리 및 환경보호는 시대적인 요구사항이기는 하지만 OECD가

입은 이러한 요구를 구체화, 현실화시키는 기폭제의 역할을 할 것이다.

6) 선진국형 노사관계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동법개정안도 OECD가입 협의 과정에서 기존회원국들이 선진국 수준의 구색을 갖추도록 요구한 사항이다. OECD는 기존의 노동법에서 제3자 개입금지와 복수노조금지, 정리해고제한등의 폐지를 주장하였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기존회원국들의 요구도 대부분 수용된 것이다. 이외에도 OECD회원국이라면 남녀 성차별의 금지, 아동 및 청소년, 외국인근로자의 노동권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고용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항시 채용하고 해고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 능력급과 같은 새로운 보상시스템이 없이 종업원들의 근로의욕이나 애사심등을 기대할 수는 없다. 또한 여성에 대한 고용과 승진의 권리를 보호해주어야 하며 미성년자와 외국인근로자들을 고용하되 이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양면성이 있는 문제들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6. 대응전략

1) 신시장개척

여지껏 OECD가입에 따른 각종 부정적인 측면만을 열거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OECD가입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이를 통해 많은 것을 얻어낼 수도 있다. OECD가입을 통해서 그동안 존재해 왔던 독과점이 해체되고 지역간, 업종간의 진입장벽이 무너지고 있다. 이에따라 활발히

신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에 영업만을 구축하는 등 기업이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이는 기업성장의 기회로 전화위복시킬 수 있는 상황을 부여해 준 셈이다. 또한 OECD 회원국으로서의 높아진 위상은 우리나라 및 우리나라 제품의 이미지를 고급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는 주류와 같이 단순한 내용물이 아니라 문화와 이미지를 끼워서 판매하는 제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외국상품이 우리나라에 밀려들어오는 것에 위축되기 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른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세계각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다행히 그동안 꾸준한 연구개발로 제품의 질이 결코 선진국 수준에 떨어지지 않는 만큼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은 현 단계에서 매우 필요한 전략적 대응이다.

2) 선진화된 유통체계 구축

OECD가입을 위해 유통시장을 개방한 이후 국내에서도 유통시장을 빼앗기면 제품시장도 빼앗긴다는 위기감이 팽배하여 이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물론 선진국의 전문유통업체들에 비해 과학적인 노하우가 뒤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업체는 그들에 비해 현재로서는 더욱 강력한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물류체계구축과 전산화 등을 통해 선진화된 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면 충분히 경쟁우위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물적유통의 개선을 통해 유통비용을 삐감하는 등 혁신적인 구조개선을 통해서 제품의 가격을 낮추게 되는 경우 수입제품과의 물류비용차이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갖게 되며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 전문업체와의 적절한 제휴를 통해 그들의 노하우를 전수받으며 공동으로 유통망을 구축한 후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오히려 동남아나 중국 등에 진출을 고려하는 등의 적극적인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3) 효율적 금융시장 활용

우리나라의 OECD가입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국내기업들의 해외차입금리가 하락하고 자금조달도 용이해 질 것이다. 또한 외국자본의 이동 자유화는 국내금리를 한자리수로 낮추어 국내 자금조달비용도 경감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 OECD가입은 금융비용을 낮추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더구나 기업의 대외신용도가 높은 경우 직접 유럽등에서 직접 해외 증권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 할 수도 있다. 이미 전로같은 업체는 수차례의 해외증권 발행을 통하여 싼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스키 원액을 담보로 하는 일종의 자산담보증권을 발행할 정도로 해외금융시장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여태까지는 국내금융시장이 낙후되어 있었던 만큼이나 국내기업들의 금융활동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자본이동 자유화에 따라 필요한 외화자금을 저렴한 해외자금으로 유로시장등에서 직접조달하고 국내에서도 선진기법을 사용한 효율적인 금융활동을 해야하는 시대가 온것이며 OECD가입 이후 달라질 금융시장여건은 이를 적절히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아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4) 소비자욕구 부응

OECD가입은 단순히 경제수준의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경제 시스템이 뿌리를 내리고 국민의식이 선진화됨을 상징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선진화된 소비자란 더욱 까다롭고 다양한 요구를 지닌 소비자임을 말한

다. 우리국민들은 이제 보다 쉽게 다양한 외국제품을 접하고 보다 발달된 마케팅에 의해서 보다 많은 정보를 취득할 것이며 이에 따라 보다 정확한 구매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때에 기존의 유통시장망이나 자사 제품전문매장을 통하여 다양한 선택의 폭이 없이 제품을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품의 개발단계에서부터 소비자가 원하는 맛, 포장, 이미지, 가격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제품 디자인이 필요하다. 이들의 욕구가 다양한 만큼, 이제 어느 한 제품이 시장을 장악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보다 세분화된 시장 단위로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여 공략해 나가야 할 것이다.

7. 맷음말

OECD에 가입했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우리나라의 수준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탈바꿈한다든지 선진국으로 가는 보증수표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OECD에 가입한다고 해서 당장 외국제품과 일본이 밀려들어와 한국

경제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다. OECD가입은 우리나라경제가 어느정도 수준에 올라섰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하루빨리 선진국 수준의 경제제도와 개방화를 이루겠다는 의지의 천명일 뿐이다. 따라서 OECD가입이 시기적으로 다소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고 그것이 어차피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면 이제 수동적인 방어책이 아닌 능동적인 공세를 펼쳐야 할 뿐이다.

본고에서 강조하였듯이 WTO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표면적이고 물리적인 문제를 중시하는 데 비해서 OECD는 사회전반적인 수준과 정부의 제도를 국제화, 선진화시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는 잔잔하지만 그 파장은 더욱 넓고 깊다. 따라서 업계의 대응도 당장 눈에 보이는 작은 득실을 따지기보다는 전반적인 체질과 관행을 개선하여 거듭나는 개혁의 차원이 되어야 하며 본고에서 지적한 OECD가입의 파급효과와 대응전략에 대한 의견이 이를 위해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閒中不放過, 忙處有受用. 靜中不落空, 動處有受用. 暗中不欺隱, 明處有受用.

한가한 가운데서도 혓되어 지내지 않으면 바쁜 때에 도움이 되고, 고요한 가운데서도 마음을 허공에 떨어뜨리지 않으면 움직일 때에 도움이 되며, 어두운 가운데서도 숨기지 않으면 밝은 곳에서 도움이 된다.

- 菜根譚중에서 -